		10 2000.0122					\	1 /
① 청구서접수일		체당금지급청구서						
년 월 일								
②접수지방노동관서		지방노동청(지청) ③접수번호						
청 구 인	④ 성 명	⑤ 주민등록번호						
	⑥ 주 소			(전	! 화 :			)
		(휴대전화 :				:		)
				(E	-mail:			)
	⑦체 당 금	원	⑧체당금	구분	□임금 □퇴직금		휴업수	당
当ら口口	⑨입금은행		지 점	명				
	⑩예 금 주							
	①계좌번호							
대 상 사 업주	사업장명			②임금채권보장 성 립 번 호				
	대표자성명		③사업개					
	소 재 지							
	④산재가입여부			(5)확인	]통지서			
		□가입 □	]미가입	대장	}번호			
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역의하여 위와 같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대리인 (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영주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								인)
※ ⑨~⑪란은 뒤쪽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수수. 없 -	
※ 공지사항 :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								

## ※ 기재요령

굵은 선안은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 ⑨~⑪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중에서 체당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

- ※ 체당금지급청구서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 실인정 신청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